

# 스포츠시설 안전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 Legal Improvement for Safety Promotion of Sports Equipment

김정규\*, 오재환\*\*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기대학교 안전경호학과\*\*

Joung-Gyu kim(kjg@nambu.ac.kr)\*, Jae-Whan Oh(pssojh@hanmail.net)\*\*

### 요약

우리나라는 선진대열 진입 무렵부터 '스포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유용성을 경험해 왔다. 이를테면 올림픽 등 국제대회 개최는 국가 내외적 발전을 추동하였다. 국가홍보에 기여한 바도 매우 크다.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향상시킨 매개체로서 스포츠 이상의 경쟁력 있는 콘텐츠는 드물다.

실제로 스포츠는 국가발전을 리드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스포츠에 대한 투자확대와 수요증대라는 선순환 구조가 체계화될 수 있었다. 그간 스포츠의 육성과 진흥에 대한 노력은 산업적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지는 경향을 갖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 생산성에는 다른 분야들과 구별되는 장점이 있다. 비교적 균형 있게 성과를 국가 전반으로 환원시킨다는 점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본고는 우리나라 스포츠 시설의 안전성 증진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국가는 스포츠 시설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여기에는 국가 및 공공의 스포츠 시설만이 아니라 민간 스포츠 시설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 발전과 국가 발전의 공진화적인 관계는 앞으로 더욱 넓게 확대될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 **중심어** : | 스포츠 | 스포츠시설 | 스포츠 안전 | 스포츠 활성화 | 국가스포츠 |

### Abstract

South Korea had experienced the great of sports since entered in advanced country group. International sports game such as Olympic developed nation. Sports is intermediate that improve Korean public information level in community of nations. It's difficult to find another contents. Also, sports is important mea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branch situation. Sports is expected to practical improvement of country more than ever.

In this way, sports had become real means of nation development. Therefore, social effort about promotion of sports need to be engaged in continuous and various form. This research proposed legal improvement for safety promotion of sports equipment. Sports facilities utilization activation may be ended by country sports competitive power.

■ **keyword** : | Sports | Sports Equipment | Sports Safety | Sports Activation | National Sports |

## 1. 서론

오늘날은 가히 스포츠의 전성시대이라 할 만하다. 경

제적 여유, 평균수명 증가, 운동의 과학화 등이 스포츠 발전을 촉진시켜 왔다. 사회구조의 전개형태를 고려했을 때 스포츠는 산업적 역량을 형성하며 계속해서 성장

접수번호 : #090903-002

접수일자 : 2009년 09월 03일

심사완료일 : 2009년 09월 17일

교신저자 : 오재환, e-mail : pssojh@hanmail.net

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스포츠는 종목만큼이나 다양한 발생 기원설을 갖고 있다. 그중에서 필자는 인간의 유희적 본능에 따른 결과물이라는 가설에 주목한다.

이에 따르면 즐거움의 수단으로 개발된 인류의 활동들은 스포츠로 발전될 가능성을 갖는다. 주의할 것은 스포츠를 직접적인 육체적 활동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정적인 멘탈 게임인 바둑이 아시안 게임의 정규 종목으로 채택된 것은 스포츠가 정신적 활동을 포함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따라서 스포츠의 종류를 집계하는 작업은 불가하다 할만하다. 그러나 범위의 유형화는 정책화의 기초가 될 수 밖에 없으므로 이에 대한 노력을 시도해야 한다.

일단 국민체육진흥 차원에서 스포츠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1]. 다만 유형이 다양한 만큼 명확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스포츠가 인권의 측면에서 인식되는 경향도 있다. 가령 스포츠 시청활동이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측면에서 정보권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지금 능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스포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이를 이용해 새로운 정보를 생산, 유통할 수 있는 권리까지도 포함되고 있다[2].

또한 사회복지 차원에서 스포츠가 논의되기도 한다. 국가는 스포츠를 통해 국민의 행복추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에서 비롯된 논리이다[3]. 사회복지지는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다. 개인의 스포츠 활동 수준을 삶의 지표로 삼아 국가가 일정한 스포츠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적극적인 복지론적인 견해인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이처럼 확장되고 있는 스포츠 관련 논의와 관련해서 시설물로서의 안전성 증진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두고 있다.

안전은 근대 국가의 성립에 전제조건이 되는 매우 핵심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안전 보장을 근거로 개인이 국가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게 되었다는 사조가 사회계약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회계약설에서와 같은 정치사상에서 논의되는 ‘안

전’과 스포츠 시설의 ‘안전’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범주에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것은 국민의 안전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져 왔다는 점이다. 스포츠 시설물의 안전확보는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이며 능동적으로 역할범위에 우선 포함시켜야 하는 분야라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2장에서는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법적 책임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고 3장에서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관례를 검토했고, 4장에서 스포츠시설의 안전 확보에 관한 법률적 보완방안을 제시하면서 결론을 맺었다.

## II.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와 법적 책임

### 1. 스포츠 시설과 스포츠 사고의 개념

스포츠 개념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스포츠 산업진흥법(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 제2조에서는 스포츠를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포츠 과학 및 체육평의회에서는 “놀이성격의 신체적 운동이나 자기 힘의 한계를 시험하는 신체활동으로서,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신체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4].

한편 스포츠 시설에 대한 법률적 구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법률제9494호 2009.3.18. 일부개정)에 명시되어 있다. 본 법에서 체육시설은 등록시설과 신고시설로 구분된다.

등록시설은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이 있고 신고시설은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 체육시설, 수영장, 체육도장, 골프연습장, 체력단련장, 당구장, 썰매장, 무도학원, 무도장이 있다.

이와 달리 스포츠 분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다. 유지군은 레저형(골프장, 골프연습장, 승마장, 국궁장, 요트장, 스키장), 생활형(썰매장, 빙상장, 수영장, 종합체

육시설,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무도학원, 무도장, 볼링장, 체육도장, 로울러스케이팅장, 간이운동장, 테니스장, 축구장), 경기형(야구장, 씨름장, 구기체육관, 투기체육관, 육상경기장, 하키장, 사격장, 양궁장), 경주형(조정카누장, 자동차경주장, 경마장, 싸이클 경기장), 당구장(단일 시설이면서 전체 체육시설의 개수의 약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별도구분)으로 구분했다[5].

스포츠시설과 관련된 법률로는 스포츠시설 건설업과 스포츠시설 운영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건설업은 스포츠시설 설치업 관련, 경기장 시설 건설 관련이 있다. 운영업 관련 법률로는 종목별 스포츠 시설 운영업 관련 법률, 리조트형 스포츠 시설업 관련 법률, 스포츠시설 임대업 관련 법률이 있다. 이상의 법률들은 스포츠 시설의 설치기준과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이러한 법률들을 위반한 경우라면 법적책임 소재는 비교적 명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스포츠 사고는 건설업 또는 운영업 관련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는 특징이 있다.

스포츠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스포츠 사고는 발생 장소와 겨루는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된다[6]. 발생 장소는 경기장, 학교, 레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이 장소들은 경우에 따라 상호 중첩되는 상황이 발생하므로 이를 통한 사고의 구분은 명확성면에서 부족할 수 있다.

겨루는 형식면에서는 먼저 대면형이 있다. 서로 맞대고 겨루는 경기로 사고의 위험이 상존한다. 다음으로 병행형은 직접 보다는 간접 형태로서 경기 본래의 승패와 무관한 접촉이 경기도중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적으로 박영석은 스포츠 사고의 발생 장소로 학교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분류를 시도하였다[7].

첫째, 책임소재에 따라 학교장의 영조물 관리소홀 여부 및 교사의 지도 상황, 둘째, 교육활동과의 관련성 정도에 따라 정규 교과과정과 자율학습 등 비 정규 활동에 발생한 사고 여부, 셋째, 원인행위자에 따라 학생 스스로, 교사, 타 학생, 학교시설에 의한 사고, 넷째, 교사의 현장 위치 여부에 따른 사고, 끝으로 장소에 따라 학

교 안과 인접 또는 외부에서의 사고로 정리하였다.

스포츠 사고의 발생을 구체적으로 유형화 하는 것의 어려움을 감안했을 때 이상의 시도는 일반적 스포츠 사고의 분류로 확장할 수도 있을 것이다.

## 2. 사고에 대한 법률적 책임

스포츠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따른 법적 책임들은 일반적으로 형사, 민사, 행정책임으로 구분된다.

형사책임에는 범죄성립요건, 사고의 위법성, 행위자의 책임요건들이 갖춰져야 한다. 그런데 스포츠 사고의 경우는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이나 형법 제17조 인과관계의 상황이 기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스포츠 사고에서 형사책임이 성립되는 사례는 많지 않다. 예컨대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경우라면 “교사가 학생을 지도 감독하는 중에 교사의 직접적인 과실로 학생이 상해를 입게 된 경우”[8] 정도가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민사적 책임이다. 스포츠 시설권자는 시설 이용자가 스포츠를 하다가 손해를 입을 경우 어떤 책임이 발생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운동경기 중 선수 상호 간의 부상, 경기장 시설의 안전성 이행문제 등 스포츠에 있어 민사법적인 책임은 상당히 광범위하다.

민사책임이란 형사책임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그 법률적인 요건으로는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따른 법률효과로는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다. 스포츠 사고에서 발생하는 민사책임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과 계약책임의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 또는 고의·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에 관한 문제가 민사법적 관점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의 내용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건강·재산 기타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가해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익침해는 적극적인 작위와 소극적인 부작위를 포함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책임성이 존재하여야 하며,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은 양 당사자간에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

하였으나 채무자의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상실된 채권자의 이익을 보상해주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계약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상태가 있다는 것과 그 외에 주관적 요건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사고의 행정책임이다. 이는 국가 공무원이 스포츠사고와 관련하여 형사 또는 민사책임을 발생시킨 경우 이들 공무원에 대해서 각종 제재를 가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히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그 책임이 사립학교의 교사인 경우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손해배상책임은 민법과 국가배상법 모두에서 규정하고 있다.

### 3. 스포츠 시설과 관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 및 공공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배상의 책임이 제기된다. 사립학교이거나 민간스포츠 시설이라면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의해 손해배상이 논의된다. 이와 같이 공작물의 점유자와 소유자는 물건을 관리 또는 소유하는 상황에서 생긴 불상사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가진다. 이 경우 점유자나 소유자는 과실 있는 자에 대해 구상이 가능하다.

민간스포츠시설의 사고는 우선 그 시설을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책임이 있고 점유자가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의를 다했을 때에는 점유자는 면책되고 그 시설의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대, 스포츠시설을 임대하여 경기행사를 개최한 경우는 그 주체가 점유자라 할 수 있다. 점유자는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는 것을 증명하여 면책을 주장할 수 있지만 소유자는 이와 같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소유자에게 보다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스포츠

시설 관리에 대한 관심을 설계와 시공의 단계에서부터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홍진배는 우리나라 스포츠센터 시설의 운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우리나라의 스포츠센터는 시설 장비 및 기구의 사후 보수 관리와 일상적인 유지 관리 수준은 양호하지만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유지 관리, 효율성 제고를 노력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공공의 스포츠센터가 민간운영 센터 보다 일상관리가 우수하다고 주장했다[9].

민간 스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한 연구라 할 수 있다.

토지의 공작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공작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공작물이란 인공적 작업에 의하여 제작된 물건으로 건물, 교량 등 지상 및 지하에 인공적으로 설치된 각종의 물건과 천장, 엘리베이터 등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건물의 여러 설비를 포함한다[10].

각종 스포츠시설물 역시 공작물이며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을 갖는다.

다만 공작물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그것이 공작물의 통상의 용법에 따르지 아니한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 발생한 사고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자에게 그러한 사고에까지 대비하여야할 방호조치의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11].

스포츠에 관한 토지 공작물로는 축구장, 테니스 코트와 같이 토지를 직접 공작하여 설비한 것과 실내체육관 형태로 토지위에 구조물로 설치한 것이 있다.

우리나라 스포츠시설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유지권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먼저 체육시설 공급량의 수요대비 절대부족하다는 것이다. 둘째, 공급측면의 고려에 우선 수요측면의 고려는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것이다. 지역별 차이가 크고 서비스 면적의 편차가 발생한 이유로 체육시설 이용편의 등 수요측면의 고려 부족을 지적하였다. 셋째, 기본체육시설에 대한 정책적 목표수준 및 이용체계의 계획적 접근이 미약하

다는 것이다[12].

이러한 문제들은 본고의 스포츠 안전보장에 관한 논의와 깊은 관련성을 갖는다.

### III. 스포츠시설 발생사고 관련 판례 동향

#### 1. 스포츠 시설 설치보존상의 하자 인정여부

사실의 개요이다. 경기장 앞 광장입구의 도로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바리케이트 2개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2미터 공간에 윗부분끼리 한 줄의 쇠사슬로 연결해 놓았는데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사이를 통과하려다 쇠사슬에 걸려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원고는 피고 의정부시에 경기장 시설의 차단에 대한 하자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판결의 요지는 종합경기장 관리소가 사이클 경기장의 진입통제를 목적으로 바리케이트 2개와 그 사이에 쇠사슬이 마치 바리케이트만 설치된 것으로 착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멀리서 진행해 오는 오토바이에게 불의의 장애물이 될 수 있으므로 위 관리소로서는 위 쇠사슬이 눈에 잘 띄는 위험표지판 등을 매달아 놓는 등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이 필요했으나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스포츠 차단시설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고 판시하였다[13].

본 사안은 스포츠시설의 안전성 확보수준에 대한 기준으로서 의미가 있다. 설치의 하자는 설치 구조상 불리, 부적당, 사용재료 등에 의한 결함을 뜻하고 관리의 하자는 시설관리, 운영상 불완전성을 의미한다.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하자에 대하여 판례에서는 해당 영조물을 통상 이용자의 판단능력, 행동능력, 설치된 장소, 환경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본래 갖추어야 할 안전에 결함이 있는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다음으로 안전시설을 완비하지 않고 수영장을 개방하여 사고가 발생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수영장의 점유자가 경기용 수영장으로 시공된 수영장을 일반인 연습장으로 개방하면서 일반인들이 수영장 안으로 떨어

어졌을 경우의 충격을 피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경우 피해자들의 손해 배상책임은 점유자에게 있다는 판례가 있다[14].

#### 2. 스포츠시설의 영조물 해당여부

소의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이 피고시 소유의 종합운동장 예정부지에서 자동차 경주를 시행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산시의 방지 및 안전성 미확보 책임이 국가배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툰 사례가 있었다.

판결의 요지는 종합운동장 예정부지가 구획정리사업의 시행당시 피고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사고 무렵까지 지상에 아무런 시설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나대지로서 공용개시가 없는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한국모터스포츠연맹의 요구로 자동차경주대회를 위한 사용허가를 했을 뿐 피고시가 이 사건 종합운동장 예정 부지를 직접적으로 일반 대중의 사용에 제공한 바 없으며 자동차 경주에 필요한 방호벽 등 안전시설을 관리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운동장 예정부지나 그 위에 설치된 안전시설이 ‘공공의 영조물’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15].

판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범위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 대중이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16].

다른 판례에서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를 영조물의 통상적 안전성 결격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가 아닌 어떠한 결함이 있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

합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아래 있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17].

### 3. 스포츠 시설내의 안전사고

기상조건이 변덕스러운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을 이용하던 중 낙뢰에 의해 사망한 자의 유족이 골프장 운영자의 공작물 설치, 보존상의 하자 및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한 사건이 있다[18].

법원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규정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본 사안에서 골프장 운영자는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한 것으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27조는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요원배치, 수질관리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안전위생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는 같은 법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 위생기준으로서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폭우, 폭설, 강풍 또는 파도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낙뢰의 위험의 경우는 예측의 곤란과 발생의 희박성으로 미루어 자연재해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른 판례로 초급자가 중급자용 코스에서 스키를 타다가 코스를 이탈하여 나무에 부딪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19]. 스키장 운영자가 시설의 설치 내지 보존에 있어 요구되는 주의의무 또는 이용자에게 대한 안전배려의무 이행의 적법성을 다툰 것이다. 법원은 동 사안에서 공작물의 설치는 그 본래의 목적을 달하는 것 외에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지 않게 하는 설비를 하여야 하고 그 설비는 주위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 환경변화의 상황에 따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이어야 할 것이나 이 경우에 요구되는 안전성이란 그 공작물의 설치 및 보존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

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말한다 할 것이며, 스키는 자연의 지세를 이용하여 하는 스포츠이고 어느 정도의 위험은 따르는 것이므로 스키장 운영자의 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 국가 소유의 골프장 연못에서 어린이가 익사한 사고에서 어린이가 골프장에 무단으로 진입하여 연못에 빠질 위험성을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경고판이나 철책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그 골프장 내 연못 등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20].

## IV. 스포츠 시설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방안

스포츠 활동의 근원적 목표는 개인의 행복을 영유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스포츠는 행복을 보장하는 활동만이라고는 할 수 없다. 경우에 따라 스포츠는 불행한 ‘위험’을 행위자에게 부과하기도 한다.

인간의 위험극복에 대한 경의심은 스포츠의 위험 수준을 높여왔다고 할 수 있다. 위험할수록 고차원의 스포츠로 인정되는 사회적 평가를 모두가 용인해 왔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서 명확히 할 것은 스포츠 참여는 그 자체가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수용한다는 자아의지의 표현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스포츠는 상존된 사고의 가능성이 스스로 또는 참여자에게 어떠한 형태로든지 양해되었을 때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 시설물로 인한 피해의 위험까지도 행위자가 용인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포츠 자체의 불안전성으로 인해 시설물의 안전은 반드시 지켜질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것이다.

스포츠 사고에 있어 형사책임의 모호성과 더불어 민사차원의 책임 역시 일정 당사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스포츠를 이루는 요소는 주최자, 지도

자, 선수, 관객객 등 다양하다. 현대 스포츠는 일정 시설물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품 만큼이나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스포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론적 접근은 한계를 갖는다. 스포츠 진흥의 중요성이 증가일로인 상황에서 보다 생산적인 측면의 대안적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사전예방을 통한 법제도적 보완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로운 법규의 제정보다는 기존 법안의 보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967호, 2008.3.21 일부개정)의 정비를 생각할 수 있다. 본 법 제3조는 시설물의 안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시설물은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의미하며 “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로 구분된다. 1종 시설물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교량, 터널, 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의미하고 2종 시설물은 1종 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그런데 이 법규는 스포츠시설에 특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적 보충이 요구된다.

제정목적부터 점검해 보면 본 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며 나아가 국민 복리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제정취지에 비추어 스포츠시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정밀진단, 안전 등급지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시설물을 1,2종으로 구분한 것과 같이 스포츠시설을 수용인원 등의 기준으로 구별해서 유형화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점검 항목을 설정하는 형태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9490호, 2009.3.18 일부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법률 제9494호, 2009.3.18 일부개정), 스포츠산업진흥법(법률 제8852호, 2008.2.29 타법개정)도 안전성 증진방안에 관한 규정의 신설이 요구되고 있다.

스포츠 관련 법률인 이상의 법규들에 조차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규정이 극히 미약한 것은 시급히 보완될 문제라 할 수 있다.

가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개요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스포츠 건축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찾아 볼 수 없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스포츠 시설물 안전과 유지관리 기본계획이 있어야 하고 안전점검 진단계획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인력수요, 유지관리 관련 정보의 구축에 관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 V. 맺음말

개인부터 국가에 이르기 까지 스포츠가 갖는 유익성은 지대하다. 스포츠 가치의 보존과 증대는 국가적 차원에서 주요 과제로 선정하여 관리될 충분한 가치가 있다.

스포츠 시설은 체육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국가와 지역의 문화공간으로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며 도시 녹지와 근린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스포츠시설은 수요에 비해 규모면에서 부족한 상황이다[21].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도 스포츠시설의 안전성 강화는 기존 시설에 대한 활용성 증대를 유도할 수 있다는 면에서 가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법규에 근거한 체육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 기본계획수립과 안전점검 진단, 필요한 인력 수요판단, 유지관리 관련 정보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스포츠시설의 안전증진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

이다.

본고에서 스포츠사고 등에 대한 판례를 고찰한 것은 시설물 안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다만 스포츠시설물의 안전문제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판례 제시가 제한되어 참조 판례로 대신하였다는 것은 연구의 한계였다.

안전문제 외에도 최근 스포츠와 환경문제 등 스포츠 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사안들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능동적인 대응 자세는 매우 큰 의미를 갖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으로 국가 스포츠 인프라의 우위를 선점하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참 고 문 헌

- [1] 3차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2003; 이상일,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 pp.319-349, 2005.
- [2] 송해룡, 김원제, 조항민, “인기 스포츠 프로그램의 보편적 접근권 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중계권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차원을 중심으로”, 미디어 경제와 문화, pp.79-120, 2005
- [3] 김상겸, “스포츠복지의 헌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1호, pp.125-147, 2007.
- [4] 손석정, 스포츠와 법, 태근출판사, 1997.
- [5] 유지곤, “스포츠시설 조성현황 및 미래형 스포츠 시설의 확충방안”, 스포츠산업 겨울호, p.17, 2003.
- [6] 佐藤千春, “스포츠事故における損害賠償責任”, 法學會年報6号, 1999; 최철호, “스포츠사고의 배상 책임에 관한 법이론과 판례”,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pp.297-317, 2008.
- [7] 박영석, 학교안전사고에 의한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2001.
- [8] 채우석, “학교의 스포츠와 국가배상책임”, 스포츠와 법, 제11권, 제1호, pp.153-179, 2008.
- [9] 홍진배, “스포츠 센터 시설의 유지관리 현황 분석을 통한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제48권, 제1호, pp.209-221, 2009.

- [10] 범경철, “스포츠시설 소유자의 법적책임”, 스포츠와 법, 제10권 제3호, pp.101-126, 2007.
- [11] 대법원 2006.1.26. 2004다21053.
- [12] 유지곤, “스포츠시설 조성현황 및 미래형 스포츠 시설의 확충방안”, 스포츠산업 겨울호, pp.18-19, 2003.
- [13] 대법원 1993.3.9. 92다54715.
- [14] 대법원 1997.11.28. 97다38299.
- [15] 대법원 1995.1.24. 94다45302.
- [16] 대법원 1998.10.23. 98다17381.
- [17] 대법원 2001.7.27, 2000다56822; 대법원 2007.9.21. 2005다65678.
- [18] 전주지법 2002.3.22. 2000가합7461.
- [19] 서울고법 1993.7.21. 92나34898.
- [20] 서울고법 1996.3.7. 95나27372
- [21] 유지곤, “스포츠시설 조성현황 및 미래형 스포츠 시설의 확충방안”, 스포츠산업 겨울호, p.17, 2003.

### 저 자 소 개

김 정 규(Jung-Gyu Kim)

정회원



- 1999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법학사)
- 2002년 8월 : 부산대학교 행정학 석사
- 2006년 2월 : 원광대학교 경찰학 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남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관리, 경찰활동, 경찰수사

오 재 환(Jae-Whan Oh)

정회원



- 2001년 ~ 현재 : 대통령 경호실 경호관
- 2008년 3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경호안전학과 박사과정

<관심분야> : 경호안전